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1.>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006.10.0000	벼	145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 른 금액
1006.20.1000	메현미	145	
1006.20.2000	찰현미	145	
1006.30.1000	멥쌀	145	
1006.30.2000	찰쌀	145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45	
1102.90.2000	쌀가루	145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145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145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145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 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 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	145	

	왔거나 열을 가해 볍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볍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볍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볍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볍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31,017	
1211.20.1120	새싹삼	31,017	
1211.20.1190	기타	31,017	

1211.20.1211	본삼	31,017	
1211.20.1219	기타	31,017	
1211.20.1291	본삼	31,017	
1211.20.1299	기타	31,017	
1211.20.1311	본삼	41,583	
1211.20.1319	기타	41,583	
1211.20.1391	본삼	41,583	
1211.20.1399	기타	41,583	
1211.20.2210	가루	41,583	
1211.20.2220	태블릿	41,583	
1211.20.2290	기타	41,583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41,583	
1211.20.3200	종자	41,583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41,583	
1211.20.9900	기타	41,583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41,583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41,583	
1302.19.1290	기타	41,583	

2106.90.3021	홍삼차	41,583	
2106.90.3029	기타	41,583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41,583	

비고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